

I. 예산개요

예산규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2억 4,71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274억 9,837만원보다 5.1%인 117억 4,875만원이 증액된 것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75억 5,792만원보다 5.2%인 92억 9,523만원이 증액된 1,868억 5,315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4,045만원보다 4.9%인 24억 5,351만원이 증액된 523억 9,396만원임.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92억 9,523만원의 자원별내역은
 - 지방세 증가 6억 66백만원
 - 세외수입 감소 8억 6,528만원
 - 특별교부세 증가 13억
 - 재정보전금 증가 30억 51백만원
 - 보조금 증가 51억 4,351만원이며,
- 일반회계를 부담주체별로 구분하면 지방세등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액의 47%인 877억 7,104만원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등이 53%인 990억 8,212만원임.

☐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92억 9,523만원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 사회개발비 64억 7,245만원
- 경제개발비 37억 9,845만원으로 102억 7,0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일반행정비 9억 6,314만원
- 민방위비 1,253만원으로 9억 7,567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92억 9,523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 주택사업 특별회계

○ 기정예산 10억 3,021만원보다 6,114만원이 증액된 10억 9,135만원으로 증액된 6,114만원은 주택용자금상환 미납자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발생한 것을 증액 계상한 것임.

☐ 의료보호 특별회계

○ 기정예산43억 9,274만원보다 17억 5,408만원이 증액된 61억 4,682만원으로 증액된 17억 5,408만원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로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을 계상한 것임.

II. 검토의견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92억 9,52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6억 66백만원, 특별교부세 13억, 재정보전금 30억 51백만원, 보조금 51억 4,35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8억 6,52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기정예산에서 50%이상 감액요구된 사항은 7건에 24억 5,430만원으로 감액율은 94%임.
- 내용별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 11억 5,578만원은 2000. 6. 24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전액 감액요구되었으며,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 4억 7,250만원,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수입 3천 6십만원, 평화의종 타종수입 3천 65십만원은 1999. 12. 21. 2000년도 본예산 승인후 전액 감액요구 되었음. 또한 6.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 기념품 판매대금 7억 5천만원은 6억 806십만원으로 91%가 감액요구 되었으며,
- 예방접종 수수료는 1억 5,005만원은 7천 175만원으로 52%, 구강염 예방사업 수수료 7백 92만원은 6백 57만원으로 83%가 감액요구되었음.
- 2000년도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위와같은 사유는 세입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는바 이후부터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지방재정운용에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2억 9,52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 64억 7,245만원, 경제개발비 37억 9,845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 9억 6,314만원, 민방위비 1천 253만원이 감액요구된 것으로 수해복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예산중 긴축예산편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요구 하였으나,감액요구대상사업중 50%이상 감액요구된 사업은 29건에 72억 862만원으로 예산편성된 74억 6,786만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 내용별로는 내무행정이 2건에 1천 79만원 66% 회계행정이 5건에 9억 833십만원 100% 문화관광이 1건에 3억원 60% 사회교육이 3건에 1천 75십만원 89% 사회복지가 5건에 57억 1,358만원 100% 산림자원개발이 4건에 2천 503만원 73%가 감액요구된 것은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결여되었을 뿐만아니라 정보의 조기확보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는바 이후부터는 적정한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정보의 조기확보등으로 건전예산편성 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회계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상환 미납자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여 수입된 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진료비에 대한 교부세가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